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0일, 김종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민의원)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질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과 외교적 상황 변화, 기술혁신의 한계 등 환경이 급변하며 K-반도체의 미래는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산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동 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제정안은 총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 보칙 등 총 4개 장, 본문 19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대통령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 및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특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특례 등의 근거를 규정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1], 시스템반도체[2], 파운드리[3]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역량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4].

또한,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간 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반도체 산업

---

1)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2)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대비됨.

3)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4) [참고자료 1] 반도체 산업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참조

에 대한 주도권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5]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있는 반도체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등 국가 최대의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 공급, 인재육성, 보조금 지급 등 국가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국의 경쟁적 지원은 반도체의 과잉공급과 가격하락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6],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 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리스크를 염두에

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지원 현황 참조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브리프 vol.25(2024.4.9.)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발전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산업구조 다변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인력 수급, 산업생태계,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등의 여건과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 및 기업의 참여 유도,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정 '22. 2. 3., 시행 '22. 8. 4.)은 '22년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로서, 제정 당시 동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릴 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주된 제정 목적이었고, 용인·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임.

동 법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산업에 집중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지자체의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비용 지원 강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별화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공통점 및 차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완·개정하는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 (안 제명 및 제1장)

제 정 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법률의 주요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동법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우수인재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목적)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국가 및 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발전 등의 내용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으며, 법률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2조(정의)는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률에서 활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

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함.

한편, 제3조(국가 등의 책무)는 법률에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를 기술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간 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타당해 보임.

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안 제2장)

제 정 안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5조(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연계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정 안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4. 제8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조성·운영·지정·해제·지원 및 지역균형발전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 정 안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장(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6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반도체산업의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연계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12개 호로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범부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려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

되지 않고 차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능상 유사·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간사위원(장관급),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차관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위원으로[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안 제3장)

제 정 안
제3장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제8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산업혁신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정하는 지역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 정 안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 정 안
8.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

제 정 안
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3.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제11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30

제 정 안
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주체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의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

제 정 안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원 사업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제 정 안
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제 정 안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3장(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변경· 해제 등(안 제8·9조)

안 제8·9조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이하 경우에 따라 '클러스터')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또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정하거나 변경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시 반도체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반도체클러스터가 지정되어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주체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추진의지, 재원조달 방안 등과 함께, 전력 · 용수 · 인력 등 반도체산업의 필수요소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특화단지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기 보다는 운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일관되고 내실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은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안 제10조는 반도체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 운영, 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차, 국내복귀기업의 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1항),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의 기반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안 제10조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세 감면, 국·공유 제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임대, 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생산시설·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토지 등의 취득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제3~7항)

안 제10조 제1항 및 제7항은 클러스터 내 연구시설·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내용에 따라 직접 보조금도 포함될 수 있음. 직접 보조금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 대하여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행위이므로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다른 정책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 마련 시 의사결정 주체와 대상,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일본·EU 등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자국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750억 달러의 대출, 25%의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5G 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2조엔 이상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음[8].

[표 3]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지원(인센티브)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시설 자본투자의 30%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9]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접 비용지원이 없는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열세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8) 단, 미국은 최근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 등에 의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재검토·변경하거나 집행 연기, 관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2024.6.)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국가간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다른 지원 정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기술개발과 자본투자 경쟁에서 현금의 확보가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1기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구축하는데 약 2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 단위상 직접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 측면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른 지원 정책과의 조화,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

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 재정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4. 6. 26.)[10]을 마련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2항은 기반시설과 관련한 조항으로, 기반시설은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현재 첨단전략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23년부터 특화단지별로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11]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대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 규모가 작아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이러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국가·지자체의 공공재 지원 의무 및 사업자 등 원인자

10) [참고자료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 6)의 주요내용 참조

11) [참고자료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참조

(수요자)의 책임 범위, 반도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안보·경제 효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 범위 및 지원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적용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24. 8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2].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지원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다량의 용수 확보 및 공급은 대규모 시설공사를 수반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나 의무지원이 아닌 완화된 재량지원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지원 대상 용수공급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은 전력·용수·폐수·도로·처리수 지하관로 등 5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 가능 시설에 단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화단지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임. 단, 동 지원기준은 `23년 등 지원이 완료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기업 투자 규모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기획재정부는 전력, 용수,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내용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용인시는 반도체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자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등 (안 제11~13조)

안 제11조는 클러스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결정·인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규제개선의 신청, 안 제13조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는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제29조는 “규제개선의 신청 등”을, 제27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 규정된 특례도 현행 동 특례 규정상 내용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규정 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단,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등과 같은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동 사항의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4조)

안 제14조는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반도체산업특별회계”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제정안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을 통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용도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특별회계의 재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원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특별회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예산의 이월, 회계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이 일반회계 및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보칙 등 (안 제4장 및 부칙)

제 정 안
제4장 보칙 등 제15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제 정 안
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4장(보칙 등)은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을, 부칙은 이 법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은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것이며,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은 관련 제도 및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시행일은 동 제도 준비에 필요한 기간 확보 차원에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은 관련 제도의 정합성 및 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출처 : OMDIA)

□ 글로벌 산업 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전체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메모리반도체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NAND	540	610	460	572	685	594	387
	시스템반도체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광개별소자		686	731	743	767	899	917	888

□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점유율

(단위: 억불)

구 분		지 역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	60.7%	61.7%	58.4%	56.9%	59.1%	60.4%	61.0%
	DRAM	세 계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	72.3%	72.4%	71.6%	71.1%	71.3%	70.6%	73.5%
	NAND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시스템반도체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	3.0%	3.1%	3.2%	2.9%	3.0%	3.2%	2.3%
	광개별소자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	7.7%	7.5%	7.4%	8.2%	7.9%	7.3%	6.3%

참고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2024. 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 (미국) 「반도체 과학법」 제정('22.8월)을 통해 제조,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인텔(美) 200억불('24.3)

○ 「국세법(IRC)」을 개정('22.8월)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2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21) 6,170억엔, ('22) 4,500억엔, ('23) 6,322억엔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TSMC 공장에 4,760억엔 지급(약 4.4조원, '22), 마이크론(美)에 2,135억엔(약 1.9조원, '23.10)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 20% 감면 발표('23.12)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3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의 30% 한도, '24.7~'29.12)

4 (중국) 역대 최대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4.5)

* 과거 사례 :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근거법>

구분	지원 근거법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보조금(390억달러) 등 재정지원 527억달러, 세액공제 25% * 보조금 : 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NOFO), 가드레일 규정 * 세액공제 : 「반도체과학법」에서 국세법 section 48D 추가 규정 ■ 첨단반도체 R&D 지원(110억달러)
EU	EU 반도체법 (EU Chips Act)	■ '30년까지 민관 반도체 투자 430억유로 이상 자금 조성 ■ 「반도체법」 요건 충족*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금지 예외 → 회원국이 보조금을 책정하면 EU 집행위가 심사·승인 * EU 내 최초인 제조시설, EU 반도체 공급망 긍정 기여 등 ■ 기존 EU 예산을 전용하여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활용
일본	5G 촉진법 (정보통신기술법)	■ 반도체 중소기업 채무보증, 반도체 관련 주식회사 신주 인수 ■ 반도체 관련 기구·비품·건물 부속 설비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특례
	NEDO법 (신에너지·기술 종합개발기구법)	■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보조금 * 경제안보기금 + 첨단반도체기금 + 포스트5G기금 = 1.7조엔
	경제안보촉진법	■ 반도체 공급망 강화 지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중국	집적회로산업 및 SW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 관련 국무원 통지	■ 기술 수준 및 영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차등 면제 * 28nm↓ + 영업 15년↑ : 10년 면제 / 65nm↓ + 영업 15년↑ : 5년 면제 / 130nm↓ + 영업 10년↑ : 2년 면제 ■ 동 통지와 별도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 (1기, '14년) 1,387억 위안, (2기, '19년) 2,041억 위안, (3기, '24년) 3,440억 위안
대만	산업혁신조례 제10조제2항	■ R&D 투자세액공제(25%)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25%)
	미래지향적인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 장비 지출에 적용가능한 투자공제방법	■ R&D 투자세액공제(25%) 조건 * 당해연도 R&D 투자액 60억 대만달러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5% 이상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25%) 조건 * R&D 세액공제 조건 + 당해연도 100억 대만달러 이상 장비 구입

참고 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 국비 지원 현황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포항·구미 등 **439억원** 예산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현황 >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 국비 지원기준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도로** 4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되, **특화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지원

* 단, 기업 투자액이 他 특화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용인·평택 특화단지는 용인 일반산단, 용인 국가산단, 평택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여 각 500억원씩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0 → 25%	15 →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10 → 20%	5 → 15%

참고 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주요 내용(`24. 6.)

◇ `24. 5월 발표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 구체화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 · 재정 · 세제 · 기반시설 지원**

❶ 금융지원

- 투자자금 : '27년까지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출자 →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4.7월부터 가동

* 적용 금리 : (대기업) 최대 1.0%p 우대, (중소 · 중견기업) 최대 1.5%p 우대

- 소부장 · 팹리스 : 現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 ('23~'25년 출자) + 신규펀드 8천억원* ('25~'27년 출자) 추가

* 구성 : (재정) 2천억원 + (정책금융) 2천억원 + (민간매칭) 4천억원 = 8천억원

❷ 세제지원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 검토('24.12월 결정 예정)

- 적용범위 : SW 구입비 등도 대상에 포함*,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 추가 : 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 · 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자문비
** 현재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만 적용

-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5년 → 3년)

❸ 재정지원 : '22년~'24년 3조원 → '25년~'27년 5조원

- R&D 예타 신속화 :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미니팹 구축
-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첨단 공공 팹과 국내 공공 팹 연계 (425억원, 과기부), 한 - 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 사업화 지원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과기부),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인력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現 18개소)·대학원(現 6개소) 및 AI반도체 대학원(現 3개소) 확대

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 도로 :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타 면제, 국비 지원
- 용수 :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 수공 비용 분담
- 전력 : LNG 발전(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